

1. 개요					
위 치	용도지역변경		용도지구 지 정	면적(m ²)	비 고
	당 초	변 경			
대치동 937 일대	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도시설계지구	44,200	대치생활권 중심
2. 상정사유			별시장		
<p>○강남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인 대치생활권중심으로서 본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함.</p>			<p>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		
3. 참고사항			제출년월일 : 1995. 5. 6		
○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의견없음.		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		
○용도지역, 용도지구 변경결정권자 : 서울특별시					
1. 개요					
위 치	용도지역변경		용도지구 지 정	면적(m ²)	비 고
	당 초	변 경			
개포동 158 일대	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도시설계지구	16,700	개포생활권 중심
2. 상정사유			2. 제안사유		
<p>○강남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인 개포생활권중심으로서 본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함.</p>			<p>○과천~우면산간 도로(광장) 결정시 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공사와 연계하여 교통처리 에 적정한 광장규모를 결정하여야 했으나, '93.7. 광장결정 당시 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우선 경기도에서 요청한 과천~우면산간 도로(광장) 건설구간 중 우리 시 구간(도로 L=180m, 광장 A=34,280m²)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음.</p>		
3. 참고사항			○금번 광장변경은 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공사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선암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통광장을 확장하는 것임.		
○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의견없음.			*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: '94.5.20		
○용도지역, 용도지구 변경결정권자 : 서울특별시					
도시계획시설(광장) 변경결정에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					
제출년월일 : 1995. 9.12					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					
1. 건명 : 도시계획시설(광장) 변경결정			(다음 페이지에 계속)		